

# 예 산 총 칙

2019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26,572,502	18,797,175
일반회계	567,061,139	17,011,834
특별회계	59,511,363	1,785,341
공기업특별회계	50,712,053	1,521,362
상수도공기업	24,001,114	720,033
하수도공기업	26,710,939	801,328
기타특별회계	8,799,310	263,97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04,238	3,127
의료급여기금운영	1,095,315	32,859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558,980	16,769
공영개발사업	399,516	11,985
농공지구조성사업	3,026,391	90,792
기반시설	18,733	562
장기미집행	496,248	14,887
수질개선	513,173	15,395
주택사업	2,586,716	77,601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637,109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포함)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3,800,000 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편성 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간주예산으로 처리한다. 다만 군비부담금은 다음년도 추경에 반영하며, 간주예산으로 처리된 사업중 이월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에 포함한다.